

# 사회통합프로그램 4, 5단계 이수기준 변경 시행 연기 알림

'20. 6. 19(금) 법무부 이민통합과

2020. 1월 개정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2020. 7. 1.(수)부터 4, 5단계 이수기준이 변경(최저 점수제)\*될 예정이었으나, 코로나19로 1학기 교육 학사일정 변경이 된 사정을 감안하여, 4, 5단계 이수기준 변경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연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 < 최저점수제 : 4, 5단계 이수기준 변경 >

한 단계의 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에 불합격 후 동일 단계의 교육을 반복 수료한 사람은 평가 응시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단계 이수되었으나, 최저점수제가 시행 되면 4, 5단계 교육을 반복 수료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단계의 평가에 응시하여 **최저 점수(40점)을 초과 득점해야 이수로 인정**

## □ 결정 사항

- 4, 5단계 이수기준 변경(최저 점수제) 시행일 연기

: '20. 7. 1. → '20. 9. 1.

## □ 유의 사항

- '20. 8. 31.까지 4단계나 5단계를 이수하지 못한 모든 참여자는 '20. 9. 1.부터 변경되는 최저 점수제 적용 대상이 됨